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4. . . (제 회)	

정보통신기반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이 개정(공포 2024. 1. 23, 시행 2025. 1. 24.)됨에 따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으로 위임한 과태료 부과 등 사항을 규정하여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개정('19.12.10.) 등으로 인한 기존 인용·폐인용 조항의 불일치를 해소하여 법과 시행령 간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기관에 대한 보호지침·보호조치의 지시가 명령으로 강화됨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수행하는 업무 강화 및 신설(안 제9조제2항제4호·제5호)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침해사고 대응 실효성 확보를 위해 보호지침·보호조치·복구조치 명령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상향 및 신설(안 제25조 별표 3)

- 기반시설 보호대책 및 이행여부에 대한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상한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보호지침 준수

명령 또는 침해사고 발생시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 미이행의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다. 개정된('19.12.10, '23.1.23)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의 인용 조문 항 변경
(안 제11조제2항제5호, 제12조제2호,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

- 안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 안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2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법 제9조제4항”으로 변경
- 안 제18조제4항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변경
- 안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비규제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와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중전의 제4호) 중 “법 제11조제1항”을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고, “명령 또는 권고”를 “명령”으로 한다.

4.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

8.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당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복구 및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의 이행

제11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4조제3항”을 “법 제14조제5항”으로 한다.

제12조제2호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법 제9조제3항”을 각각 “법 제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4항”을 “법 제9조제5항”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법 제9조제3항제2호”를 “법 제9조제4항제2호”로 한다.

제25조 중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30조”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2항제1호”를 “법 제30조제3항제1호”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30조제2항제2호”를 “법 제30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3 제2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라목(중전의 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750	1,500	3,000
---	--------------	-----	-------	-------

별표 3 제2호다목 및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마.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자가 총괄하는 업무는 각호와 같다. 1. ~ 3. (생 략) <u><신 설></u> 4. <u>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 명령 또는 권고의 이행</u> 5. ~ 7. (생 략) ③ (생 략)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보호책임관이 총괄하는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u>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복구 지원 및 피해확</u>	제9조(정보보호책임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u>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침 준수 명령의 이행</u> 5. <u>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u> ----- ----- <u>명령</u> ----- ----- 6. ~ 8. (현행 제5호 ~ 제7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정보보호책임관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u>법 제14조제5항</u> ----- -----

산 방지에 필요한 조치

6. (생략)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법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정보공유·분석센터

3.·4. (생략)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은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전담반을 구성하는 때에는 별표 1의 사항을 고려하여 취약점 분석·평가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의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수행기관이 취득한 관리기관의 비밀정보가 외부에 유출

6. (현행과 같음)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지원기관의 범위)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9조제4항제2호-----

3.·4. (현행과 같음)

제18조(취약점 분석·평가 방법 및 절차) ①법 제9조제3항-----

-----.

②----- 법 제9조제4항 -----

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취약점을 분석·평가하게 하는 때에는 취약점 분석·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점 분석·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략)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법 제9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2의 기준을 말한다.

② (생략)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

③법 제9조제4항-----

-----.

④법 제9조제5항-----

-----.

1. ~ 3.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보공유·분석센터의 취약점 분석·평가) ①법 제9조제4항제2호-----

-----.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

-----.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

1. 일반기준 (생 략)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2호	200	350	5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다. 법 제11조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600	1,200	2,000
(신설)	(신설)	(신설)	(신설)	(신설)

1. 일반기준 (현행과 같음)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적으로 취약점을 분석·평가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1호	150	300	500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3항제2호	200	350	5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1호	1,500	3,000	5,000
라.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호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30조제2항제1호	750	1,500	3,000
마. 법 제1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복구 및 보호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0조제1항제2호	1,500	3,000	5,000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이버침해대응과	
연 락 처	(044) 202 - 6466